

## 자기공명영상(MRI)촬영료 지급기준

- ① MRI 촬영료는 직무상요양승인 부위에 한하여 인정하되 직무상 요양기간(기간연장 포함) 중 5회 이내에서 인정한다.

※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42조(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의 준용 제22조제2항 및 제23조)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2회 이내 인정  
(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7조의2 적용. 2016.1.1. 시행)

- ② 지급액은 1회 96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.